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대법원 공개변론」

어떤 공방이 오고갔나?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에 더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해석상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1주는 평일(월~금) 5일(현행 행정 해석)

▶ 1주 근로시간 최대 68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40 + 연장근로 12					휴일근로 16	

1주는 토·일 포함 7일(여야 잠정 합의 내용)

▶ 1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40 + 연장근로 12						

어제('18.1.18.) 노동계 최대 현안인 휴일근로 연장
근로수당 중복할증 지급여부에 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다음 세가지였습니다.

- 1 /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2 /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하여
가산하여야 하는지
- 3 / 중복할증 인정 시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어떠한지

이 쟁점들에 관하여, 찬성측은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
한 단위기간은 1주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7일
로 보는 것이 상식적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감을 주므로 사용자에게 금전
부담을 가중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
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
해야 함

그동안의 잘못된 해석은 바뀌어야 할 대상이지
그것이 되려 잘못된 해석을 유지할 이유가 될 수
없음

중복할증

적용찬성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을 적용
시 휴일근로 50%, 연장근로 50%를 중첩적으로 가
산하여 100%를 가산하여야 함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목적(근로시간의 양적 통제)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의 목적(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
로에 대한 질적 보상)은 상이하므로 가산율을 중복하
여 할증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시간단축은 신규고용창출을 견인할 것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파급력은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의 것임

이 쟁점들에 관하여, 반대측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말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부당함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유급휴일을 말하고 무급휴일과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 연장근로는 기준근로 초과 근무를 말하므로 개념상 중복이 불가하여 할증률을 중첩하여서는 안됨

산업현장에서는 업종과 업태에 따라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입법론이 아닌 특정 판결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그 충격과 파급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됨

한편,
재판부는 다음의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가 인식한 문제점은?

?

근로시간을 48-44-40시간으로 순차 단축하여 온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1주간 근로 가능한 총 시간(68시간)이 되려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해석이 아닌지?

?

중복할증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하고, 전국의 사업장이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

가산율에 관하여, 휴일야간·야간연장·휴일야간연장수당은 중복하여 가산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휴일연장근로수당도 중복지급하지 못할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재판부가 인식한 문제점은?

?

중복할증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는 경우, 휴일에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한 근로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지?

?

중복할증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는 경우, 월~금요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로한 사람은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일에도 근로하여야 하는데, 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지?

?

제56조(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의 문리해석상 연장휴일 가산율의 중복적용이 불가한 것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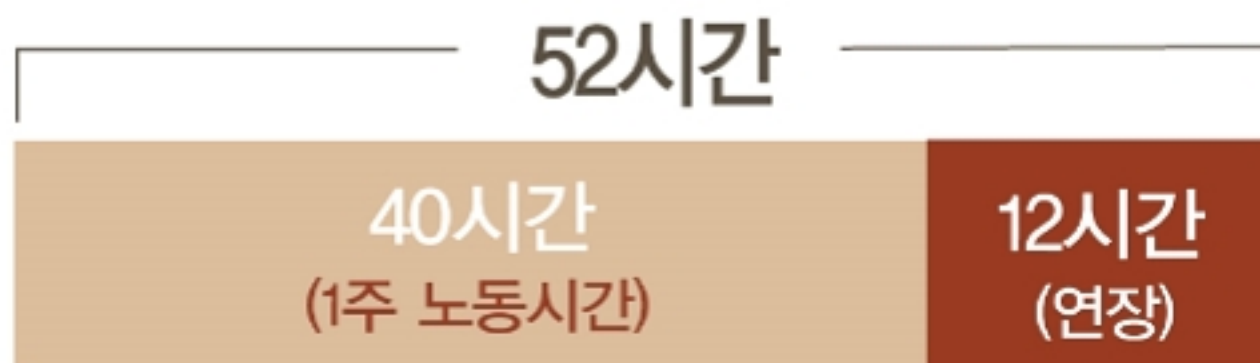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경우

〈일금 10만원 노동자가 휴일근로 때 받는 돈〉



〈주당 최대 노동시간〉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금 10만원 노동자가 휴일근로 때 받는 돈〉

15만원(현행)

10만원
(하루치 임금)

5만원
(휴일)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현행)

40시간
(1주 노동시간)

12시간
(연장)

16시간
(토·일휴일)



.....

노동계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중복할증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반면 경영계는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 가산까지 할증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이 최소 7조 5,90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

판결 결과는 이 사건의 선고를 기다리며 추정 중이었던 수많은 통상임금 판결에도 막대한 파급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법원도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의식하여, 이례적으로 자유토론식 공개변론을 열어
쟁점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부
와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 → 52시간)**을 강
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각 기업에서는 중복할증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이
귀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평 노동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 노동팀은 최고의 서비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김하영 변호사

EMAIL



.....
TEL

